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11. 29.(수)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동관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4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나, 다>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안건 진행을 위해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결사항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23-44-197) (비공개)

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023-44-198) (비공개)

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023-44-199) (비공개)

(취재기자 입장)

【 15시 15분 】

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3-44-200)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나> 유진이엔티(주)의 (주)와이티엔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주)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와 유진이엔티(주)가 신청한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2023년 11월 3일 (주)연합뉴스티브이의 지분 0.8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 신청인의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진이엔티(주)는 2023년 11월 10일 (주)와이티엔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 신청인의 개요는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학교법인 을지학원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주)연합뉴스티브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23년 11월 3일에 체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거쳐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분취득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이엔티(주)입니다. 유진이엔티(주)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23년 11월 10일에 체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거쳐 202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시청자, 경제·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총 4일 동안 운영하였으며, 운영 일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은 아래 <표>에 적시된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연합뉴스와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주)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상증자, 자금대여, (주)연합뉴스와의 협약개선 등을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 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함. 방송사업의 수익을 학교법인의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적합하지 않음. 반면,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혁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승인을 불허하여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주)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습니다. 유진이엔티(주)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주)YTN의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보도채널의 영향력과 공적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주)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주)YTN의 수익성 자산 매각을 통해 (주)YTN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주)YTN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유진이엔티(주)와 특수관계자의 재정여건을 검토하였을 때, 향후 (주)YTN에 대한 운영·투자 자금 조달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YTN 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논의되었으나, 신설법인인 (주)YTN는 특수관계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승인을 불가하여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유진이엔티(주)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하며,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PP 최다액출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ESG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특수목적설립법인으로서 향후적인 재무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주)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이엔티(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주)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책임 등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시면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요청 및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의 여러 이야기와 논란에도 최선을 다해 묵묵히 변경승인 심사에 애써 주신 심사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도PP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와 관련하여 민영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저하 우려 목소리부터 졸속심사를 통해 민간에 보도PP를 넘기는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정치권의 음모론까지 외부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온갖 외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가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방송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심사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정책임·공공성·공익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의 의견과

같이 당장의 결론보다는 양측 법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고려하고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진행 그리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해서는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후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의결 이후 향후 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여 주시고 해당 법인에서는 이를 충실하게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촬영기자 입장)

이번 보도PP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편 출범 때 승인심사를 한 이후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심사 그리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처음부터 공언했었고, 또 그 약속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그동안 방송사의 대주주 변경심사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 중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담당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방통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고 정말 공정하게 심사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이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신 심사위원들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줄속심사다”, “짜맞추기 심사다” 이런 정치공세를 편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이 보도전문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접수까지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의 반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기자 퇴장)

마.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3-44-201)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마>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매일방송에 대해 <별지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안 이유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재승인 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운영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총점 720.77점을 획득하였고, 중점 심사사항에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평가 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소견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팩트체크 절차 강화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과 제작·수급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제작 및 편성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부합하는 전략이 요구됨. 6개월 업무정지와 관련된 재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경영상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됨. 방송산업 발전 및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지속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주요 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입니다.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선거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팩트체크 담당자의 지위 격상, 출연자 관리, 내부규정 재정보 등 팩트체크 절차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해 언론윤리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실적이 편중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지역민방 및 SO와 공동제작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항목입니다. 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및 시청자 수요에 기반한 편성 등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향후 계획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를 어린이 가시청 시간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항목입니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된 재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경영상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입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이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계법령 위반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자본금 증가 조건과 관련하여 최초 승인 시 자본규모를 고려하여 유상증자 외에도 다양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항목입니다.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청각 취약 계층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입니다. (주)매일방송은 중점심사사항 과락 없이 720.77점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의결 대상이며, 재승인 유효기간은 5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높고,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관련 향후 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의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재승인 시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되어 부과되었던 조건 중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공모하여 선임하도록 한 조건은 방송사의 경영 관련 사항이므로 조건에서 권고로 하향하고, 그 외에 경영투명성 확보 계획 제출 등 5개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당시 부과한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유지·부과하고, '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도록 부과한 조건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운 방송사의 현 상황과 방송사업의 안정성 등 최초승인 시 일정 자본규모 이상을 요구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조건과 권고사항 부과 최소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재승인 기간 동안 이미 이행된 사항 또는 경영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조화로운 편성 등 방송법에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건 및 권고사항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시면 승인장을 교부한 후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재승인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 그리고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의결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협찬금지 준수와 콘텐츠 투자 확대 등 부여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역시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성 존중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조건 및 권고사항 개수를 축소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권고로 하향 조정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무처(안) 중에서 재승인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매일방송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중단되어 있지만 본안소송 2심이 진행 중으로서 언제든지 방송 중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매일방송이 이번 심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현재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였겠지만 현재 재판 중인 방송중단 행정처분 사안을 현행 재승인 심사 제도 하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 중단의 위험과 향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의 장기보다는 3년으로 단축 부여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을 더 정치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라는 방송사 재승인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 중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일 오늘 수정의결이 이루어지면 (주)매일방송은 재승인 관련 조건과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고 시청자를 위한 좋은 방송과 함께 방송중단 관련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개월 집행정지’라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건 최종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중간점검 형태로라도 또 저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2년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더 이상 없으시지요?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이 안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바.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3-44-202)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바>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편성평가정책과장직무대리

-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2022년도에 실시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평가 대상은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입니다. 평가 영역은 내용·편성·운영 영역입니다. 평가 절차는 평가지원단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공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 TV 총점 700점입니다. SBS는 전년대비 총점이 상승하고, KBS1, KBS2, MBC는 하락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KBS1, SBS, MBC, KBS2 순서입니다. EBS는 전년에 비해 평가점수가 1.3점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민방 TV 총점 600점입니다. 전년대비 케이엔엔, 청주방송, 제주방송은 총점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하였습니다. 부산방송, 청주방송, 대전방송, 대구방송, 울산방송, 강원방송, 제주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경인방송 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총점 300점입니다. AM 라디오 방송입니다. MBC와 SBS는 전년대비 상승하고, KBS1과 KBS2는 하락하였습니다. MBC, KBS1, SBS, KBS2 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FM입니다. KBS1은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SBS, KBS2, MBC는 하락하였습니다. 지상파 DMB TV 총점 300점입니다. 지상파 계열은 SBS, KBS, MBC 순서입니다. 비지상파 계열은 한국DMB, YTN DMB 순서입니다. 다음은 비(非)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PP입니다. 총점 600점입니다. MBN과 채널A는 전년대비 총점이 상승하고, TV조선과 JTBC는 하락하였습니다. MBN, 채널A, TV조선, JTBC 순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전문 PP 총점 500점입니다. 전년대비 2개 보도PP 모두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MSO와 위성방송입니다. MSO는 총점 500점, 위성방송은 총점 400점입니다. MSO의 경우 사업자별 평균을 기준으로 현대HCN, CMB는 전년대비 총점이 상승하였고,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는 하락하였습니다. 위성방송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70점이었습니다. 위성방송은 총점이 변경되어 평가점수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쇼핑 PP 총점 500점입니다. 롯데홈쇼핑, 공영쇼핑, NS홈쇼핑은 전년대비 총점이 상승하였고, 현대홈쇼핑, GS SHOP, 홈앤쇼핑, CJ온스타일은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심의 결과입니다. '자체제작 및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과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 항목,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사업자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방송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2022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방송평가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 방송평가 심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를 포함하여 3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22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방송평가는 다수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조정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항목이 대폭 변경된 평가였습니다. 평가결과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군과 비교해 낮아진 재무건전성 지표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등에 의한 감점 등의 증가로 평가점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해당 방송사들의 개선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평가는 방송의 공정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평가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평가제도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무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예,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사.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44-203)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사> “어도비(Adobe)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조사기획총괄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0조제1항제5의2호를 위반한 어도비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아일랜드 리미티드(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에 대해 벌지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와 조사 배경,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피심인 행위 사실입니다. <나>번 이용요금 및 환불 관련입니다. 맨 아래 <표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된 포토샵 서비스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월간약정 상품요금이 월 37,000원으로, 연간약정 월별청구는 월간약정을 35.1% 할인한 월 24,000원, 연간약정 선불결제는 37.6% 할인한 연간 277,200원을 계약 체결 시 납부하게 됩니다. 위약금 및 환불은 연간약정 월별청구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약정 의무기간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는 계약 14일 이후에는 선납부한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번 이용계약 체결 시 위약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입니다. 연간약정 월별청구 상품은 계약 14일 이후 중도 해지 시 50%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이용자는 온라인 웹의 계약 체결 초기 화면부터 총 4개의 단계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실은 <증적자료1> 이하의 캡처한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간약정은 계약 14일 이후에는 선납부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함에도 계약체결 초기 화면에 “언제든지 취소 가능 수수료 없음 ①”라고 고지하고, 이용자가 화면의 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야 14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위사실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은 약관에 포함되더라도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등 약정조건의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확인된 피심인의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위약금 및 요금 환불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가 규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과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턴, 한글과컴퓨터 등은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 국내 위약금 산정 기준은 10%~20% 수준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피심인은 연간약정 월별청구 상품을 1개월 이내 해지하면 이용요금의 약 550%, 8개월 이내 해지하면 요금의 25%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하는 등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제안·부과하는 행위와 연간약정 선불결제 상품 계약 시에 일시불로 선납부한 연간 요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행위는 약정기간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견청취 전에 확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없으시면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심인이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이제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안을 어도비에 사전 통지하였고 어도비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를 앞서 처분 당사자인 어도비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피심인인 어도비로부터 의견진술 위임을 받은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송근준 변호사님 맞습니까?

○ 송근준 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 Senior Legal Counsel

- 예, 맞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방성현 변호사님 맞습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맞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은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어도비에게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되도록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심인 측에서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간단히 발언하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3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지요.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의견진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 삼은 행위는 2가지 행위입니다. 우선 중요사항을 저희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각 단계별로 중요사항 취소 및 환불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한국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서 한국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취소 및 환불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가 이런 취소·환불조건을 만들고 또 한국 웹사이트에서 게재한 것은 한국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보다 나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 중에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한 분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이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도비 측에서 제출하신 의견서 상세한 의견자료도 검토했습

니다. 오늘 간략하게만 의견진술하셨는데 고객이 구입 과정이나 어도비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한두 번만 클릭하면 취소 및 환불조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어도비가 50%라는 이런 구체적인 위약금 규모를 온라인 첫 화면에 얼마든지 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네 번의 과정을 거쳐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클릭을 네 번씩이나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시스템상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도비가 취소 및 환불조건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단계를 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하는 단계에서 보면 30개 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별로 클릭하면 해당 상품별로 다시 3가지 구독상품이 있다고 보니까 중요사항들을 고지할 때 관련된 공간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독한 후에 결제하는 단계별로 중간중간 알리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고려해 보면 첫 단계에서 명확하게 고려하게 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두 번째, 연간약정 월별청구 중도 해지 시 50%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설명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 유사 서비스와 비교해 봐도 이 정도 위약금은 과도한 책정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50% 위약금을 책정한 것입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원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50% 위약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월별청구한 상품이 있는데 연간 12개월 동안 쓰겠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30~40%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 50%를 원래 부과하려고 했던 것이 중도 해지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50%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객들이 월별청구 사용하는 고객들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품 설계 측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50%라는 숫자 그 자체가 갖는 부당함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아까 이 부분을 10%, 20% 개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개선계획은 세워져 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우선 취소 및 환불조건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잔여기간의 50% 위약금 부분은 없애고 전체 계약기간의 계약금액에 관한 10% 위약금으로 개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월별상품과의 차액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소 및 환불조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이것은 법률대리인 분들에게 여쭙볼 것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작년 어도비 한국 내 매출액, 영업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어도비 매출액이라면 어도비코리아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동관 위원장**

- 예.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어도비코리아 매출액은 500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영업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래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잘 아시지만 저도 어도비를 씁니다. 저는 영어로만 봐서 어도브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내에 와서 사업하시는 글로벌사업자들을 차별하지 않나 하는 데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전달해 주셔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금만 더 배려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꼭 어도비 경영진 측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특별히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 방성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도비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사무처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조사기획총괄과장

-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환불과 위약금 관련 사안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을 비롯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입니다.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은 86억 7,965만원입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서 위반행위① 해지권 제한과 위반내용② 중요사항 미고지 각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관련 매출액 876억 7,965만원의 100분의 1 이하인 8억 7,6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최종 부과(안)입니다. 위반행위①, ② 기간 중 전체 매출액에 기준금액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필수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876억 7,900만원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인 3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876억 7,965만원의 100분의 1인 8억 7,600만원을 초과하여,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안>입니다. 총 과징금 17억 5,200만원입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각각 적용하여 위반행위①에 8억 7,600만원, 위반행위②에 8억 7,600만원으로 총 17억 5,200만원을 부과한다입니다. <2안> 총 과징금 13억 900만원입니다. 위반행위①은 8억 7,600만원, 위반행위②는 50% 위약금 부과와 환불시점을 이용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 부과 기준을 0.1%를 적용한 4억 3,300만원으로 총 13억 900만원을 부과한다입니다. <3안> 총 과징금 8억 7,600만원입니다. 위반행위①은 8억 7,600만원, 위반행위②는 온라인 화면상 상세한 설명에 일부 제한이 있고, 이용자가 단계를 거치면 알 수 있어 이용자 이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미부과하여 총 8억 7,600만원을 부과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사무처가 보고한 3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전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필수 프로그램인 포토샵부터 문서 프로그램인 아크로벳(Acrobat)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로 피심인이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선납부한 이용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행위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 불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몇 단계를 거쳐야만 알 수 있게 만든 것은 피심인이 정당한 고지를 하였다는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될 수 있음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이를 인지하여 해지하고자 하여도 위약금으로 그 뜻을 쉽게 이루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같은 법 위반행위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중요사항 미고지 위반행위는 불충분한 고지로 판단하여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사무처의 안중에서 두 번째 <2안>을 적용하여 총 13억 900만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의견개진하시고, 만약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도 그 이행여부를 향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2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어쨌든 본인들도 개선 조치하겠다고 직접 의견까지 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켜보고 감경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저도 <2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동관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3분 폐회 】